

학부 졸업자격 및 심사 규정

2019.04.24. 개정

2022.10.00. 개정

제1조 (졸업자격)

- ① 충남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교육과정과 선박해양공학인증프로그램(ABEEK)에서 정한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논문, 졸업시험, 캡스톤디자인, 국가자격증 취득 중 1 개 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을 통과한 자에게 '선박해양공학사' 자격을 부여한다.
- ② 졸업예정자는 학과에서 정한 기일 내에 상기 졸업자격 항목을 선택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.
- ③ 학·석 연계과정 학생과 조기졸업대상자는 졸업예정자와 같은 자격을 부여한다.

제2조 (심사기준)

(1) 졸업논문

- ① 졸업논문은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다.
- ② 희망하는 지도교수와 면담하여 승인을 얻은 후 학부 연구생으로 최소 1 학기 이상 연구에 참여하여야 한다.
- ③ 지도교수 포함 3 인의 평가위원은 졸업시험일 이전까지 학부연구생의 성실도 및 졸업논문의 완성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(Pass/Fail)하고, Fail 인 학생의 경우 졸업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.

(2) 졸업시험

- ① 졸업시험은 7 학기(97 학점이상 이수) 대상자부터 응시할 수 있으며, 매학기 1 회(5 월, 11 월) 실시한다.
- ② 시험과목은 3 과목(유체, 구조, 설계 및 생산)으로 한다.
- ③ 합격 기준은 각 과목별 100 점 만점에 평균 60 점 이상이며, 개별 과목이 50 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.

- ④ 전공분야의 취업 연계형 인턴 결과로 18 학점 취득예정 시 졸업시험은 구술고사로 대체한다.
- ⑤ 기사자격증에 대해 필기 합격 시 졸업시험 중 2 과목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.
- ⑥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인정된 전국대회에서 4-6 등 입상은 졸업시험 2 과목을 합격한 것으로, 전국대회 참가 시에는 1 과목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.
- ⑦ 4 대보험이 인정되는 취직자의 경우, 교수회의를 통해 졸업시험을 구술고사로 대체한다.

(3) 캡스톤디자인

- ① 캡스톤디자인은 입학 후 공학관련 전국대회인 학생선박설계콘테스트, 휴먼-솔라보트 대회, 특허유니버시아드, IMO 모의총회 등에서 입상 이상의 수상경력에 대해 인정한다.
- ② 상기 항에서 정한 이외의 전국대회 입상 실적의 인정 여부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.

(4) 국가자격증

- ① 국가자격증은 입학 후 취득한 전공 관련 기사자격증(조선기사, 용접기사, 기계기사 등)에 대해서 인정한다.
- ② 전공 관련 기사자격증의 인정 여부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.

- 부 칙 -

제1조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 -

제1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.